

현안분석

2016-04

국제카르텔 규율과 대처방안 연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6-04

국제카르텔 규율과 대처방안 연구

성 승 제

국제카르텔 규율과 대처방안 연구

Research on International Cartel Discipline
and the Measure

연구자 : 성승제(연구위원)
Seong, Seoung Je

2016. 10. 14.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 국제카르텔은 오늘날 소비자효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나, 각국 경쟁당국은 소비자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규제를 하기 쉽지 않음
- 각국 경쟁당국간 협력 증진이 모색되고 있음

연구의 목적

-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각국 경쟁당국의 협력방안을 일부 탐색해봄으로써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을 인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
- 국제카르텔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역외적용의 시작과 적응의 시작

- EU 출범에 따른 시장통합이 시작되면서 위험성 인식하기 시작
 - 초기에는 주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어 반발이 있었음
 - 지역·국가적 시장 분할에 의한 카르텔의 위험성 인식 확산
 - 국제카르텔도 각 국가 소비자에게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됨
- 리니언시 제도의 채택 확산
 -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면책 부여로 인한 논란이 있었음
 - 국제카르텔 단속의 어려움에 따라, 이 논란이 불식됨
- 각국 경쟁당국 협력 방안
 - 국제카르텔이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해로움을 끼침
 - 단속하기 어렵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국제카르텔의 특성상 각국 경쟁당국 협력이 필요함
 - 현행법상 경쟁당국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의 조절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시장경쟁질서 회복에 일부 기여하는 자료 제공
 - 시장과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비 자료 제공

▶ 주제어 : 카르텔, 국제카르텔, 리니언시, 다국적기업, 초국적기업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this study

- International cartels reduce consumer utility, but Competition Authorities is not easy to need to increase consumer utility regulation
- Competition Authorities may promote cooperation being sought

Purpose of this study

- Check the dangers of international cartels, and by reviewing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would like to contribute to eliminate the risk of international cartels

II . Main Summary

It takes a long time to recognize the danger of international cartels

It bega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for the removal of international cartel activity

- EU has emerged, it began to recognize the risks of the market, while EU integration begins

- Initially recognized as a violation of sovereignty, there was a backlash
- EU was aware of the risk of a cartel to divide the region or country
- The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cartels a threat to consumers, spread
- The system of Leniency is spread
 - There was a debate about the responsibilities of voluntary complainant Waiver
 - Depending on the difficulty of the international cartel enforcement, the controversy being wiped
- Competition Authorities Cooperation
 - International cartels gives harm to consumers in each country
 - International cartels are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of illegal activities it is difficult to crack. So there is a need nat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cooperate
 - Confidentiality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current law on competition authorities may be appropriately reduced

III. Expected Outcome

- It provides some data that contributed to the market economy recovering

- Legislation also provides maintenance materials to be beneficial to all the consumers, enterprise, and markets

▶ Key Words : cartel, international cartel, leniency, global corporation, multinational corporation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12
제 2 장 국제카르텔의 형성과 존속	15
제 1 절 카르텔의 정의	15
제 2 절 국제카르텔 영향과 법제도 출현	16
제 3 절 카르텔의 지속가능성	17
1. 국제카르텔의 형성배경	17
2. 국제카르텔의 특성	18
3. 국제카르텔의 형성과 유지	20
제 3 장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적 취급	29
제 1 절 국제카르텔에 대한 취급의 변천	29
1. 1990년대 이전	29
2. 1990년대 이후	32
제 2 절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33

제 4 장 국제카르텔 국내외 처벌 및 사례 조사와 국제 협력 ...	41
제 1 절 국내법상의 처벌제도	41
제 2 절 리니언시 프로그램(leniency program)의 도입	43
제 3 절 우리나라의 국제카르텔 규제 관련 법규정과 국제 협력 ..	45
1.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45
2. 국제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협력	48
3. 주요 국제카르텔 사례 분석	51
제 5 장 결론: 국제카르텔과 경쟁당국 협력 증진	59
1. 경쟁당국 협력의 필요	59
2. 카르텔규제를 위한 국제협력 촉진 노력	61
3. 다자간 협정	62
4. 양자간 협정	63
참 고 문 헌	6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국제적인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이동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 슬로건처럼 국제카르텔 규제 동향이 최근 세계화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세계화나 국제화가 오늘날의 현상은 아니며 오늘날의 국제화나 세계화는 두 번째의 흐름이라는 견해가 있다.¹⁾ 그러므로 국제카르텔 규율이 증가한 원인은, 제국주의 시대의 여파로 규모의 성장을 이룩한 다국적 활동을 하는 거대기업들의 독과점의 폐해를 경험한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활동은 이른바 자유주의적 경제이념의 토대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달리 말한다면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관세가 인하되고 다자간 무역협정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무역은 확대되어 그 만큼 국제적인 가격 담합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범위도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쟁자들이 경쟁을 축소시키기 위한 공모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카르텔은, 경쟁법이 규율 대상 중에서도 위험한 경쟁제한적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카르텔의 운용은 가격을 인상시키고 공급을 제한하고 혁신을 억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집중된 시장, 낭비 그리고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의 경쟁법상 규제대상이

1) 이런 논의는 많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두 번의 세계화 파도 중에, “첫째는 1820-1914년 기간이며, 다른 하나는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이다. 19세기의 세계화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의 증대를 기반으로 일어났으며 영국이 이를 주도했다(7쪽). …중략… 많은 학자들은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계화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고 주장한다(8쪽).”

박번순/전영재,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2001.6, 7-8쪽. 구체적 근거는 동 보고서 등 참조.

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카르텔이 국내회사들에 의한 것이건 외국회사들에 의한 것이건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²⁾

국제카르텔의 숫자가 제2차 세계대전 전보다 감소하였음에도, 최근에 들어 상호간에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국경 또는 문화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그들의 경쟁자들과 협력하는 국제카르텔이 매우 많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제한행위를 규제하는 경쟁법을 시행하고 있고 기업의 국제적인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카르텔에 관여되었다는 이유로 외국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그 반대로 국제카르텔을 형성한 외국기업들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제재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³⁾

이 보고서는 국제카르텔의 정의와 국제카르텔이 초래하는 피해 그리고 현재의 법적 규제에 대한 현황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카르텔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예외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카르텔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아니하게 된다. 가장 잘 알려진 카르텔은 석유수출국기구(the Organisation

2) 이 보고서는 민간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정부가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국제카르텔도 연구의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양자를 구분하여야 할 경제적·법적 이유가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카르텔은 단순한 이윤극대화 이상의 훨씬 광범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참여자로서 주권국가를 포함하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들만 참여하는 국제카르텔과는 달리 취급되고 있다.

3) 자유화가 세계적인 시장 개방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종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초국가적 반경쟁행위 그리고 이를 통한 더 큰 이윤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마련함에 따라 국제카르텔의 형성을 촉진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국제카르텔을 자유화가 소비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축소하게 된다고 한다.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라 할 수 있다. 이 기구는 OPEC 국가들이 공급하는 석유가격을 결정한다. 이러한 면에서 OPEC은 주권적 카르텔(a sovereign cartel)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이른 바, 사적 국제카르텔(private international cartels: 이하 “국제 카르텔”이라 한다)에 국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제카르텔은 기본적으로 사기업 생산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 또는 억제하는 결과를 갖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카르텔 합의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수입카르텔, 수출카르텔, 국내카르텔 그리고 앞서 언급한 OPEC와 같은 주권적 카르텔은 연구 범위가 아니다.

제 2 장 국제카르텔의 형성과 존속

제 1 절 카르텔의 정의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카르텔에 대하여 부당공동행위라 부르면서 규율하고 있다(제4장).

경제협력개발기구(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의 정의를 보면, 카르텔은 경쟁자들이 가격 결정의 공모, 입찰조작, 쿼터배정 또는 시장 분할 등을 위한 협정, 관행 또는 약정(agreement, practice or arrangement)을 의미한다.⁴⁾ 이러한 카르텔의 핵심적인 목표는 공동이익 극대화(joint profit maximisation)로서, 시장에서 유해성을 갖는 경쟁행위의 대표적 유형으로 보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정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카르텔을 형성한다. 카르텔을 형성하는 기업들은 목표 가격 또는 최저가격을 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하거나 공급량 쿼터나 시장점유율 쿼터를 정하거나 지역적으로 시장을 배정하거나, 또는 주요 고객들을 특정한 회사들에게 배정한다. 국제 카르텔은 그 구성원들이 둘 이상의 국가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⁵⁾ 국제 카르텔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든 경제 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이 그러한 카르텔 공모행위에 취약하다.

4) Joie Chowdhury, International Cartels - An Overview, Brief Paper No.5/2006 Cuts Center for Competition, Investment & Economic Regulation, http://www.academia.edu/8642101/Private_International_Cartels_-_An_Overview. (최종방문 2016.9.6.)

5) 카르텔에 참여한 어느 기업이 다른 카르텔 참여기업과 같은 국가 내에 있으나 실제로는 외국기업의 자회사인 경우도 있다.

제 2 절 국제카르텔 영향과 법제도 출현

각국은 당연히 국내의 경쟁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법 법제도를 만들어왔으나, 경제활동이 세계화되어 가면서 미국을 필두로 하여 서서히 경쟁법을 외국에서 외국인 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적용하는 국가들이 출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의 이론이 발달하게 되었다.⁶⁾

한국은 공정거래법을 2004년 개정하여,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적용한다」(동법 제2조의2)는 조항을 설치함으로써 역외적용을 국내법에 수용하였다.

국제카르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러한 효과를 측정할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합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카르텔이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접근방법중 하나를 사용한다. 즉, ① 카르텔 형성 후의 가격 변화, ② 카르텔 형성 후의 무경쟁 상태 시기와 가격 전쟁 시기의 비교 및 ③ 카르텔 가격과 카르텔형성 전 가격이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통용되었을 가격의 비교 등이다.⁷⁾

개념상의 어려움 외에도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분석을 어렵게 한다. Connor and Lande는 카르텔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를 조사하여 중위값 추정 과다요금인상 비율이 약 25%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⁸⁾ 그 밖에 국제카르텔로 인한 관련 상품 또는

6) 윤세리, “세계화시대의 공정거래법의 전개 방향”, 『저스티스』(통권 98호), 2007.6, 6쪽.
7) Margaret C.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International Cartels”, 2 Issues in Competition Law and Policy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2008), pp.1109-1110.
8) John M. Connor & Robert H. Lande, “How High Do Cartels Raise Prices? Implications for Optimal Cartel Fines”, Tul. L. Rev., Vol. 80 (2005), p.513.

서비스 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약 30%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⁹⁾

국제카르텔이 세계경제에 끼치는 피해는 정확히 계량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크다.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거나 입증되지 못한 카르텔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카르텔로 인한 피해는 아래와 같다.¹⁰⁾

- ① 상품과 서비스가 불필요하게 비싼 값으로 공급되며 높은 가격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 ② 상품과 서비스의 선택범위가 축소된다.
- ③ 카르텔 구성 회사 등은 시장의 영향에서 벗어나므로 비용절감이나 혁신에 대한 자극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수요독과점의 경우)카르텔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제 3 절 카르텔의 지속가능성

1. 국제카르텔의 형성배경

카르텔들은 실행될 경우 경제적 및 법적인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치밀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효과적인 부당공동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합의된 방법을 통하여 카르텔 참여 기업들은 경쟁을 피하고 서로의 기업활동을 조정함으로써 그들 모두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이다. 개별적인 기업들은 협정을 어기고 경쟁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할 수 있고, 이를 억제하고자 국제카르텔에서는 지리적 시장할당(geographic market allocation)을 사용하는데, 이는

9) John M. Connor, Private International Cartels: Effectiveness, Welfare, and Anticartel Enforcement, Purdue Agricultural Economics Working Paper No.03-12
<http://ageconsearch.umn.edu/bitstream/28645/1/sp03-12.pdf>. (최종방문 2016.9.6.)

10) Joie Chowdhury, op.cit.

국내 카르텔이 선호하는 단순한 생산할당(production quarter)과는 다르다.¹¹⁾ 이처럼 국가간 장벽을 이용한 지리적 시장할당은 카르텔에 참가한 기업들이 그들 사이의 시장분할과 또는 상대기업들이 카르텔 협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카르텔은 국내카르텔보다 국가들의 문화적 차이, 환율변화 및 특정한 국가가 부여하는 무역상의 우대조치 등으로 인하여 그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로 말미암아 국제 카르텔 구성원들 간의 긴장과 카르텔 자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¹²⁾ 그럼에도 생산을 하는 카르텔을 형성한 기업들은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카르텔을 만들어내려 하는 등, 카르텔은 제품의 가격을 가능하면 어떤 시장의 독점기업이 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인상함으로써 참여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것이다.

2. 국제카르텔의 특성

국제카르텔은 광범위성과 내구성, 지속적 존재, 비밀성 등이 복합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하 국제카르텔들이 내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충격에 직면하여서도 계속하여 조직되고 존속하는 방법들을 살펴본다.

(1) 광범위성과 지속기간

국제카르텔은 광범위성을 갖는다. 2003년에 출간된 Connor의 보고에 따르면 1990년 이후 2002년까지 미국과 EU의 경쟁당국은 약 100건의 국제카르텔을 기소하였다.¹³⁾ 그러나 6 또는 7개의 카르텔 중 1개만이

11) Valerie Y. Suslow, "Cartel Contract Duration: Empirical Evidence from Inter-war International Cartels", *Indus. & Corp. Change*, Vol. 14 (2005), p.705.

12) Margaret C.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op.cit.*, p.1110.

13) John M. Connor, *op.cit.*

적발되어 기소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이나 EU외의 국가들에서도 다른 카르텔들이 기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⁴⁾ 이러한 면에서 국제카르텔은 광범위하게 성립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도 카르텔이 성립하고 광범위하게 활동하였던 것은 알 수 있는데, 한편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아마도 경쟁법 법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제정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을 생각한다면 개발도상국에 걸친 국제카르텔의 활동은 선진국들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본다.

(2) 지속가능성

국제카르텔은 성공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져야 존속할 수 있다. 한편 반면에 카르텔에 참가한 개별 기업 구성원들은 카르텔 협정을 위반하고 카르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함으로써, 카르텔 협정에 참가한 다른 기업들을 배반하여 자신들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높여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충동에 빠질 수 있다. 때문에 카르텔이라는 공모에 참가한 회사들은 같이 참가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협정을 배반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카르텔이 성공하려면 그 카르텔 협정에 참가한 개별 구성 기업들이 서로 하고 싶어 할 배반적 행위에 빠지는 것을 막아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비밀성

국제카르텔 운영은 각국 경쟁당국이 규제하는 것이므로 비밀리에 성립하고 운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활동인 만큼 개별 국가를 직무 영역으로 하는 개별 경쟁당국

14) OECD, Fighting Hard Core Cartels: Harm, Effective Sanctions and Leniency Programs, 2002, <https://www.oecd.org/competition/cartels/1841891.pdf>. (최종방문 2016.9.6.)

들이 국제카르텔의 존재를 알아내고 또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카르텔 운영자들은 협정의 존재를 비밀로 부치기 위하여 치밀한 노력을 할 것이며, 이는 그들도 문제의 행위가 유해하고 불법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인데, 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소방장비카르텔을 조사하면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공모자들은 그 파일들을 본국으로 가져가서 하루 종일 4개의 거대한 모닥불을 피워 소각하였다.¹⁵⁾

3. 국제카르텔의 형성과 유지

(1) 국제카르텔의 형성·유지

1) 협상과 합의

카르텔은 그 참가한 기업들로 하여금 해당 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때의 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 한다. 이 경우 흔히 필요한 것은, 그들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양을 공동으로 감소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그들간에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고 그것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대개 먼저 부당공동행위나 담합에 가담하려는 기업들은 서로 의사타진을 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한 채널을 갖추게 된다. 경영활동과 관련된 합의를 필요로 하는 채널이어야 하므로 이 경우 관련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카르텔의 경우 두 단계의 조직이 있어서, 대별하자면 최상층 집행부 단계와 판매 담당의 실무수준 단계가 그것이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연산(citric acid) 카르텔의 사례를 보면, 4개의 구연산 생산 기업들은 1991년 7월부터 1997년 6월

15) OECD, Hard Core Cartels - Recent progress and challenges ahead, 2003. (Joie Chowdhury, op.cit. 재인용)

의 기간 동안 가격 담합을 하였는바 이를 위하여 정교한 계층구조를 개발하였던 바, 카르텔 참여회사들의 고위 임원들이 먼저 카르텔 합의에 관한 포괄적인 틀을 정하고 하위 임원들이 일상적인 카르텔 운영을 담당하였다.¹⁶⁾ 근래에 유럽에서 기소된 국제카르텔의 대부분은 참여회사들의 고위 임원들이 대략 연간 2회의 회합을 가졌으며 일부 카르텔의 경우에는 분기별 회합을 가졌다.¹⁷⁾

카르텔이 사용할 수 있는 시장획정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리적 분할 이외에도 최대 구매고객을 카르텔에 참가한 특정한 생산 기업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구매고객을 배정할 수 있게 되면 카르텔에 참가한 기업들은 그들 사이에 체결된 부당공동행위 또는 담합을 깨지 않고 가격차별 등 이익을 늘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Vitamin B2 카르텔의 경우 장래의 범세계적 판매 쿼터량을 정하는데 기존의 시장 점유율에 기준을 두고 형성되었다.¹⁸⁾ 위의 고객배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카본제품(carbon products) 카르텔들 중 하나는 대규모 구매고객들과의 거래를 개개의 카르텔구성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유럽 전역의 대규모 구매고객들에 대한 통일적 가격 시행의 곤란을 회피하였고, 산업동관(industrial copper tubes) 카르텔과 메틸글루케민(methylglucamine) 카르텔도 카르텔 구성원간의 경쟁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객을 배정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¹⁹⁾

16) Margaret C.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op.cit., pp.1118-1119.

17) Ibid, p.1119.

18) Commission Decision of 21 November 2001 relating to a proceeding pursuant to Article 85 of the EC Treaty and Article 53 of the EEA Agreement (Case COMP/E-1/37.512 – Vitamins).

19) Commission Decision of 3 December 2003 relating to a proceeding pursuant to Article 85 of the EC Treaty and Article 53 of the EEA Agreement (Case C.38.359 – Electrical, Mechanical Carbon, & Graphite Products).

2) 조 정

조정(Coordination)은 카르텔이 존속하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사정변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경쟁 기업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고 다른 경쟁자의 기술도 널리 잘 알려져 있으며 또한 특정한 구매고객들과 오랫동안의 관계를 유지해온 안정적인 시장이라면 그 협상이 간단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해당 시장분야에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한지 얼마 안 되었거나 기술적 변화가 나타난 경우라면, 카르텔에 참가한 기업들간의 조정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카르텔 구성 기업들 중 하나가 그에게 배분된 출하량과 시장점유율 배정에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다. 아마도 그러한 신호의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카르텔 합의를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물론 카르텔이 깨어지면 다시금 경쟁이 조성되고 가격 다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카르텔이 지속되려면 경쟁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고, 가격 다툼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재조정하여야 할 텐데, 결국 이는 카르텔 구성원들간의 시장점유율의 재배분을 초래하게 하고 카르텔의 해체 또는 새로운 카르텔 형성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²⁰⁾ 예컨대, 라이신 카르텔에서 ADM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당해 시장에서의 3분의 1의 시장지분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ADM이 가격전쟁을 통하여 시장지분을 얻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존의 시장 참여기업들인 일본 기업들이 거부하였다.²¹⁾

이처럼 서로간에 양보할 범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카르텔은 지속할 수 없다. 카르텔에 참가한 다른 경쟁 기업들이 협력할 것이라는 신뢰가 존재하여야 카르텔 구성원들간의 합의에 도

20) Margaret C.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op.cit., p.1119.

21) Ibid. p.1120.

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전제 요컨대 상호신뢰가 부당공동행위 또는 담합의 감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상호신뢰는 같은 시장 분야나 아니면 다른 시장일지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서로간에 이루어졌던 합의를 하였던 경험이나 문화적인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Podolny and Scott Morton는 영국에서의 해운회사들 사이의 소위 선적카르텔(shipping cartel)의 경우 사회적 평판이 비슷한 회사들의 카르텔 참여는 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적 평판이 낮은 시장진입자들은 카르텔 참여회사들의 약탈적인 가격담합 행위에 직면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²²⁾ 이와 유사하게 유럽의 운송산업 카르텔과 관련하여 카르텔 참여회사들의 유사한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이 그러한 카르텔 형성과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지리적인 인접성은 카르텔의 성공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글도 찾아볼 수 있다.²³⁾

카르텔은 한 번의 협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정을 재협상한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상호 조정을 요하는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령, 환율의 변동은 가격에 합의하고 국제적인 차익거래(international arbitrage)의²⁴⁾ 방지를 도모하려는 국제카

22) Joel M. Podolny & Fiona M. Scott Morton, "Social Status, Entry and Predation: The Case of British Shipping Cartels 1879-1929", J. Indus. Econ., Vol.47 (1999), pp.41, 41-67.

23) Margaret C.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op.cit., p.1121.

24) 차익거래는 재정거래(裁定去來)라고도 하며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도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NEW 경제용어사전, 미래와경영연구소, 2006.4.7., 미래와 경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2560&cid=42111&categoryId=42111>. (최종방문 2016. 9.8.)

르텔에게는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 간의 협정을 재협상할 필요성을 초래할 수 있다.²⁵⁾

한편 시멘트카르텔은 운송비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점가격담합(base-point pricing)을 포함한다.²⁶⁾ 이처럼 산업 또는 시장 분야에 따라서는 그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가격과 수량에 대하여 부당공동행위나 담합을 하는데 합의할지라도, 그 밖의 가격결정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카르텔이 존속하기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카르텔 구성회사들이 합의된 사항 외에 투자를 확대하여 생산과잉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수량과 생산가격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끼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을 주는 방법도 있고, 운송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산품의 최종인도까지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2) 국제카르텔의 대내외적 도전

카르텔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며 카르텔은 흔히 다음과 같은 3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각각 첫째 조정(coordination)의 어려움, 둘째 카르텔은 참여기업들에 의한 기만행위(cheating)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 셋째 카르텔은 당해 산업에 자연적(natural) 진입장벽이 없더라도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²⁷⁾

25) Barbara Alexander, “The Impact of Exchange Rate Levels and Changes on International Cartels: Implications for Liability and Overcharges”, *Antitrust L.J.*, Vol. 70 (2003), pp.819-46.

26) 기점가격담합(Base point pricing)이라 함은 회사들이 기본비용(base cost)에 어떤 시장으로서의 운반비용을 추가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점가격담합을 판매회사들간의 일종의 담합으로 보고 있지만 철강과 자동차 산업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Base_point_pricing. (최종방문 2016.9.9.)

27) Margaret C.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op.cit.*, p.1117.

위 첫째에 대하여 카르텔 즉 부당공동행위나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가격을 선택하고 부당공동행위나 담합에 참여한 참가 기업들 간의 출하량을 나누기 위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행동과 한계를 합의하여야 한다. 대개의 경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기업들은 특별한 이익이나 합의의 관행이 뚜렷하기 전에는 그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위 둘째 기만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공동행위나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은 홀로만의 이익을 극대화할 유혹을 받는 탓이다. 모든 참여기업들이 출하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한다면, 대개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카르텔이 정하는 가격이나 수량에 따른 것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더 많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싶어 할 수 있다. 더 많은 이익을 원할 수도 있다.

기만행위의 誘因(incen-tive)은 담합으로 인한 장래의 이윤 확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담합 시도를 좌절시킬 수도 있어서, 기만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격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격전쟁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²⁸⁾

(2) 대내외적 도전에 대한 국제카르텔의 극복 수단

현실에서 카르텔들이 이러한 세 가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제카르텔의 발전과 내부적 기능작동(functioning)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 기만행위(cheating)의 탐지와 억제

국제카르텔에서의 가격전쟁과 기타의 처벌메커니즘은 어떤 구성원들의 기만행위를 억제할 수 있지만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이루어

28) Ibid., p.1118.

진다. 대개 첫째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가격전쟁을 초래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둘째 보상, 처벌 그리고 측면 보상(side payment) 제도를 통하여 기만행위의 유혹을 감소시킨다.²⁹⁾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의된 점유율에 못 미치는 판매를 한 구성회사들로부터 상품을 구입한다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카튼보드(cartonboard) 카르텔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생산자들이 직전의 기간에 자신들의 합의된 판매액을 초과한 때에는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여야 했다.³⁰⁾

대부분 카르텔들은 생산량과 판매액을 모니터링하는 바, 이러한 점은 최근의 국제카르텔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예컨대, 비타민 D3 카르텔은 정기적으로 생산량과 판매액등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였다.³¹⁾ 이처럼 카르텔은 부당공동행위나 담합에 참가한 기업들에 대하여 서로 사익을 억누른 대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카르텔들은 통상적으로 구성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정보의 수집과 공유는 가격과 수량을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반드시 그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어서, 카르텔 구성원들은 서로의 기만행위를 효과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고객과 공급업자에 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으니, 예컨대, 산업용 동관(industrial copper tubes) 카르텔은 구성회사들 중에서 시장주도회사들(market leaders)을 정하여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고객방문을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으며 메티오닌(methionine) 카르텔 구성회사들은 원료

29) Ibid., pp.1121-1122.

30) Commission Decision of 13 July 1994 relating to a proceeding under Article 85 of the EC Treaty, (Case IV/C/33.833 – Cartonboard).

31) Commission Decision of 21 November 2001 relating to a proceeding pursuant to Article 85 of the EC Treaty and Article 53 of the EEA Agreement (Case COMP/E-1/37.512 – Vitamins).

공급업자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메티오닌 주원료 공급업자와 공장가동율 등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였다.³²⁾

2) 시장장벽 설정과 강화

카르텔에 참여하지 아니한 여타 회사들의 행동을 제한할 수 없는 카르텔들은 그 여타 회사들의 생산확대와 신규 회사가 그들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억제하려고 한다. 그 억제 노력이 꼭 성공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생산과정이 재산권적 기술(proprietary technology)이나 복제가 어려운 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카르텔들은 그 확산을 지연시킨다. 예컨대, 철재(steel beam) 카르텔과 흑연전극(graphite electrode) 카르텔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과정의 습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참여회사들에게 기술정보의 흐름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³³⁾ 이중보호관(preinsulated pipe) 카르텔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사용하였는데, 한편 카르텔 참여 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을 이용할 수도 있다.³⁴⁾

이상을 보건대 카르텔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누리 본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다른 카르텔에도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는 부당공동행위 또는 담합을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업들이 경쟁자들과의 친밀한 관계와 조직상의 기법을 발전시켜 와서 능숙하게 카르텔에 참여할 능력이 커지고, 그로 인해 이익을 누리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2) Ibid.

33) Margaret C.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op.cit., p.1124.

34) Ibid., p.1125.

제 3 장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적 취급

제 1 절 국제카르텔에 대한 취급의 변천

1. 1990년대 이전

최근에 들어 국제카르텔의 유해성에 대해 많은 문헌들이 다루고 있지만 국제카르텔은 반드시 근래의 현상에 불과하거나 자유화의 부산물은 아니다.

국제카르텔이 모습을 보인 것은 적어도 1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40년대와 1950년대 이후 그 형성이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990년대 다시 범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³⁵⁾ 사실 국제화나 세계화가 최근에 진전되었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1900년을 전후로 한 소위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모국에 의한 전세계적인 자본의 이동과 기업활동의 세계화가 더 강력했다고 볼 수 있다.³⁶⁾

오늘날 경성 카르텔(hard core cartel)에 대한 공격적인 규제정책과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카르텔이 관용되거나 심지어 조장되었다.³⁷⁾

이 시기 즉 20세기 전반기에 제국주의적 관념하에 활동하던 각 국가들은 자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히려 독점 기업의 출현을 반기고 북돋는 경향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적 시대의 연장이라고 할 이 시대에는 식민 모국의 영향력을 앞세워 다수의 국제적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들끼리 연합하여 존재함으

35) John M. Connor, op.cit.

36) 이와 비슷한 논의에 대한 수많은 문헌 중에 예컨대 앞의 박변순/전영재 글의 논지를 참조할 수 있다.

37) Org. for Econ. Cooperation & Dev.,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Effective Action Against Hard Core Cartels, OECD Doc. C(98)35/FINAL 3, 1998 (여기에서 “경성카르텔”이라는 용어를 가격을 설정하거나 시장을 분배하기 위한 민간 협력계약을 언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로써 국제카르텔이 광범위한 시장과 상품들에게 성립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에는 “카르텔이 비록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카르텔이 전쟁으로부터 초래된 경제적인 어려움을 수습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개별국가에서의 또는 세계적으로 불건전한 상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³⁸⁾ 이미 1930년대에 세계무역에서 국제카르텔이 지배하는 비율이 30~40 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유럽과 미국에서 화학회사들은 이 무렵 국제카르텔 형성에 특히 적극적이었으니, 예컨대, 1942년 미국의 Thurman Arnold 대법원 판사는 독일회사인 I.G. Farben과 미국의 회사들간에 162개의 카르텔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³⁹⁾

이 시기는 근대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는 私소유권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적 관행과 전통이 광범위하게 존재했을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라는 의미가 널리 전파되었을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활동의 자유가 상당히 널리 인정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반경쟁법(antitrust laws)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51년 출발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는 흔히 유럽 역내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국제기구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그 생산협력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카르텔 유사한 측면도 있음에도 추진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잘 알려져있다시피 현재의 유럽(EU)은 카르텔을 규제하는 정반대의 정책을 널리 추진하고 있다. 카르텔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대규모 벌금의 부과 등은 EU 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가 된지 오래인데, 이것은 협

38) Margaret C.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op.cit., p.1107.

39) Helga Nussbaum, “International Cartel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Multilateral Enterprises in IN Historical Perspective, (Alice Teichova, Maurice Lévy-Leboyer & Helga Nussbaum eds., 1986), pp.131-34 (Ibid. 재인용).

력보다는 경쟁을 통해 각국간 시장 통합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1890년 Sherman Act 이후 강력한 카르텔금지법을 갖고 있던 미국도 1990년대 이전에는 국제카르텔을 기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국제카르텔을 미국이 기소한 첫 번째 사례는 미 법무부가 1927년 독일의 Kali Syndicate와 프랑스의 Société Commerciale des Potasses d'Alsace 및 Potash Importing Corporation을 포함하는 국제탄산칼륨카르텔 참여자들을 기소한 것이었다.⁴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많은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기소하였으나 그 후 수 십년 동안 크게 줄어들었는데, 국제카르텔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회피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며, 일부 사례에서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주권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었으며 또 다른 사례들에서는 국제카르텔이 중요한 원자재 (탄산칼륨 등)의 유일한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기소하는 것인 경제 전반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아니하였다.⁴¹⁾

이처럼 국제카르텔이란 것을, 부당공동행위나 담합의 외형만 보이면 단속하던 국내 경쟁법 규율과는 달리 취급하는 형태가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왔다. 199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했다.

미국에서 1980년대에는 국내카르텔에 대한 기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 바, 주로 국내 시멘트 생산자들, 우유유통업자들 및 도매 제빵업자들의 공모(conspiracies)에 집중되었으며,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국내카르텔 사건들은 미국정책이 의식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기소를 회피한 것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제카르텔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가져온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때까지도 제소하지 못하였던 것이다.⁴²⁾

40) Margaret C.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op.cit., p.1111.

41) Ibid. p.1111.

42) Joel Klein, The War Against International Cartels: Lessons from the Battlefield,

2.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부터 국가들 특히 미국의 경쟁법 사건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행동이 변화하였다. 카르텔 규제를 위한 집행활동이 증가하고 기소되는 횟수가 이 때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였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 기소된 사건들이 늘어날 때마다 그 케이스에서 배울 수 있거나 습득할 수 있는 정보들로부터 각국 경쟁당국들은 국제적인 카르텔 운영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들도 규제 활동이 증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전 수십년 동안 농약과 식품처리제, 흑연·탄소 제품 및 금속 산업 분야에서는 국제카르텔이 적발되지 않았는데, 당시 국제카르텔들 중 일부는 단기간에만 존속하였고 일부는 10년 넘게 운용되었다고 하는데, 한편 현재 국제카르텔의 존속기간은 7년 6개월 정도로서, 이는 초기의 카르텔 평균 존속기간과 거의 같다고 한다.⁴³⁾ 1990년대 이후에는 시멘트와 같은 기본상품 카르텔과 순수예술품 경매와 폐수처리시설건설과 같은 특화된 서비스 등은 기소된 바 있고, 컴퓨터 칩과 같은 고도기술 산업에서도 가격담합(pricefixing)을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⁴⁴⁾

이처럼 국제카르텔에 대한 규제 활동이 늘어나고 집행실적이 쌓이면서 경쟁당국들은 국제카르텔의 실체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국

Address at Fordham Corporate Law Institute, 26th Annu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Antitrust Law & Policy 5 (Oct. 14, 1999), available at <http://www.usdoj.gov/atr/public/speeches/3747.pdf>. (최종방문 2016.9.5.)

43) Margaret C.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What Determines Cartel Success?" J. Econ. Lit., Vol. 44 (2006), pp.49-50.

44)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관련 되어 있다. U.S. Dep't of Justice, Sixth Samsung Executive Agrees to Plead Guilty to Participating in DRAM Price-Fixing Cartel (Apr. 19, 2007).

https://www.justice.gov/archive/atr/public/press_releases/2007/222770.htm. (최종방문 2016.9.6.)

제카르텔이 국내시장에도 상당히 유해하며, 그 규모가 막대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1997년 이후 미국의 상업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들을 기소하였으며, Antitrust Division에서 부과한 벌금의 거의 30억 달러 중에서 90% 이상이 국제카르텔 활동에 대한 기소와 관련하여 징수하였으니, 미 법무성 독점금지국이 1천만 달러 이상의 법인에 대한 벌금을 징수한 51건 중 42건에서 법인 피고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었던 바, 이 숫자가 보여주는 바는, 전형적인 국제카르텔이 미국의 1개 회사와 그 경쟁자인 유럽, 아시아 및 세계 전역의 3 또는 4개의 시장 주도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⁴⁵⁾ 이처럼 부당공동행위 가령 가격 담합 또는 시장배분을 위한 기업들간의 국제협정에 대한 법적 취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도를 높이게 되었다.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1990년대의 WTO 등 글로벌화가 그 직전보다 더 진행된 이후 카르텔 제한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졌다.

제 2 절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오늘날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1990년대 미국이 주로 적용을 시작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이미 공정거래법 조항에 추가하기도 하였고 해서 널리 확산된 경쟁법 조항이 되었다. 물론 그 역사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역외적용 조항이 통용되기 전에는, 어떤 기업의 국제적인 기업활동에서 경쟁법 위반이 자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자국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닌 한 국내경쟁법을 적용하지 않는 속지주의 원칙이 더 널리 적용되었었다고 할 수 있다.

45) Margaret C.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op.cit

1990년대 이후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행위가 자국의 시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경쟁법을 적용한다는 효과이론이 등장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⁴⁶⁾ 미국의 제2순회법원은 이미 1945년 Alcoa 사건판결에서 외국에서 외국기업이 행한 행위가 미국으로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졌고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서면법의 효과이론(effective theory)에 의거하여 역외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⁴⁷⁾

그 후 1979년 Timberlane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역외 적용 요건을 적시하였으니, 관할권 행사를 위해서는 첫째, 미국의 대외통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치고자 한 것일 것, 둘째, 손해가 드러날 정도로 미국 시장에 대한 미친 실질적인 영향을 입증할 것, 셋째, 대외통상에 미치는 영향 등 미국의 이익이 다른 나라의 이익보다 훨씬 강할 것 등이다.⁴⁸⁾ 그 후 Hartford Fire 사건 판결에서는 역외적용을 결정할 때에는 미국의 무역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⁴⁹⁾ 요컨대 역외적용을 하는 법적 근거로서 제시된 것은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법 사건을 들고 있는 것이다. 역외적용은 후술하다시피 여타 국가들로 하여금 반발을 하게끔 하였지만, 이처럼 자국내 경쟁시장에 영향을 미

46) 소위 효과이론은 경쟁법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이론을 소개한 글로는, 김민서, “국제경제관계에서의 국가관할권에 관한 연구: 미국의 효과이론과 속인주의 확대시도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2003.12; 이재민, “IUU규제 조치와 국내법의 역외적용: 미국 및 EU의 관련 입법과 집행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11; 김용진, “미국 증권법의 역외적 적용에 관한 최근 동향과 미국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 방안”, 『동아법학』, 동아대 법학연구소, 2011.8; 이호영, “동아시아 3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총』, 전북대 법학연구소, 2010.6; 김용진, “국제특허분쟁사건에 대한 역외적 국내재판 경향과 그 대응전략”,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6.8 등.

47)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v._Alcoa. (최종방문 2016.9.8.)

48) <http://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F2/749/1378/359283>. (최종방문 2016.9.9.)

49) https://en.wikipedia.org/wiki/Hartford_Fire_Insurance_Co._v._California. (최종방문 2016.9.1.)

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적용하게 됨으로써 그 반발을 누그러뜨리게 된다.

1982년에는 미국 의회가 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를 제정하여 미국 반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외국에서 행하여진 행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이고 또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효과가 미국에 미치고 그 효과가 미국의 반경쟁법상에 반하는 경우에 역외적용을 할 수 있다는 논리였으며, 한편 1988년 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은 미국의 수출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국외의 반독점행위라 할지라도 미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미국 반경쟁법이 역외적용되지 않는다는 즉 미국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기준으로 그 적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는 미국 수출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반경쟁법을 적용토록 개정되기도 하였는데, 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은 민형사 사건 모두에 적용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민사 사건에서의 적용기준과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⁵⁰⁾

역외적용 사건은 미국에서도 이처럼 처음부터 명료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역외적용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계속 늘게 된 것은, 경쟁법 영역에서는 자국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전술처럼 1960년대 이후 2차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어떤 한 나라의 시장은 다른 나라의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하여서만 경쟁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경쟁법 적용상 실효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초기 역외적용은 타국의 비난이나 반발을 무릅쓰고 진행되게 되었다.

50) http://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publishing/antitrust_source/aug13_lipsky_7_30f.authcheckdam.pdf. (최종방문 2016.9.6.)

1990년 중반 이후 미국 반경쟁법의 역외적용이 크게 증가하여, Aluminum Company of America 사건에서 러니드 핸드(Learned Hand) 판사가 언급한 “효과기준”(effects test)은 (미국의) “수입 또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진 활동”을 한 외국의 피고에 대한 반경쟁법 사건에서 “그러한 활동 수행이 실제로 그러한 “수입과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될 때에는 미국의 관할권이 미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⁵¹⁾

이와 같이 국제카르텔에 대한 기소가 증가하게 되자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의 첫 번째 반응은 미국 반경쟁법의 영토외적 적용에 대한 이의제기였다. 본디 주권을 보유한 각국은 자국 영역내에서는 주권에 기반한 법적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중세 이후 확립된 국제질서라고 할 수 있었다. 이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낳는 역외적용은 역외적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여러나라 정부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가령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영토외적 적용에 입각한 기소는 국제법위 위반되는 것이며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²⁾ 유럽 국가들도 1990년대 초 유럽의 카르텔 구성 회사들에 대한 미국의 기소에 대해 이와 유사한 이의를 제기하였다.⁵³⁾

그럼에도 유럽국가들은 아마도 자국의 소비자들도 이러한 국제카르텔에 의하여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점차 역외적용

51) Allison J. Himelfarb, Comment, “The International Language of Convergence: Revising Antitrust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with a Uniform Understanding of “Extraterritoriality,” U. Pa. J. Int’l Econ. L., Vol.17 (1996), p.922.

52) Steven L. Snell, “Controlling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in Global Markets: Reflections on the Concepts of Sovereignty, Fairness, and Comity”, Stan. J. Int’l L. Vol.33 (1997), pp. 217-18.

53) James J. Friedberg, “The Convergence of Law in an Era of Political Integration: The Wood Pulp Case and the Alcoa Effects Doctrine“, U. Pitt. L. Rev., Vol 52 (1991), pp. 293-94 (당시 유럽의 입법자들은 미국의 반경쟁법의 영토외적 적용에 따른 소추에 대해 분노하였으며 미국의 자국민을 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영토외적 적용을 “차단하는” (blocking) 입법을 하였다).

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물러서게 된 것 같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이유는 유럽에서 활동중인 국제카르텔들이 지리적 경계를 설정하여 시장을 분할하고 상품배분을 한다는 점도 유럽 각국들이 역외적용에 대하여 조금씩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국제카르텔이 국내 소비자들의 효용을 침해하고 또한 소국들로 분할된 유럽에서 자주 국제카르텔들이 지리적 분할을 이용하여 각국 경쟁당국들의 규제를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반경쟁적 행위로 말미암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러한 현상은 유럽의 경제적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여겨 유럽공동체는 카르텔의 적발에 적극성을 보이게 된 것 같다.

EU의 경쟁법 역외적용은 1969년 국제염료카르텔사건에서 EC 조약 제85조 (현재의 EU기능조약 제101조) 제1항의 상호협조적 행동에 해당된다고 보아 역외 사업자의 행위가 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제재금을 부과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럽 재판소는 효과이론을 부정하였음에도 역외에서의 문제의 행위가 역내에서의 행위와 함께 진행되어 있다고 보아 유럽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였다.⁵⁴⁾

그 후 1988년 WoodPulp사건 판결은 ① 문제의 행위가 EC 역외에서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EC역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② 관련 협정이 EC 역외에서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문제의 상품이 역내에서 판매된 경우, ③ 카르텔 참여기업이 역내의 자회사, 지점, 대리점 등을 통하지 않고 EC 역내 구매자에게 직접판매한 경우에도 EC의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으니, 요컨대 이러한 경우들의 경우 EC 조약 제85조를 역외 적용한다는 것이었다.⁵⁵⁾ 결국 이런 행위들이 누적되면서 미

54) 經濟産業省, 国際カルテル事件における各国競争当局の 執行に関する事例調査報告書 (2006), p.4. <http://www.meti.go.jp/press/2016/06/20160603002/20160603002-1.pdf>. (최종방문 2016.9.2.)

55) 경제산업성 전계문헌.

국이 아닌 나라들 즉 EU에서도 역외적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위 또는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적용으로서 누적되는 단초가 된 것이다. 말하자면 역외적용은 미국만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법적 응용의 형태는 아니다. EU처럼 자국의 영향력이 세계를 좌지우지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 나라의 지리적 구분을 없애고 한 경제단위로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영역이 나타나면서 역외적용은 어찌면 당연한 그리고 필요한 법적 해석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에는 “Guidelines on the effect on trade concept contained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OJ 2004C 10107)”이 개정되었는 바, 이에 따르면 EC 조약 제81조와 제82조의 위반행위는 EC 역외에서 관련 계약이 체결되었든 혹은 관련 관행이 행하여졌든 간에 EC 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쟁법이 적용된다.⁵⁶⁾

아무튼 점차 국제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기소 경향은 미국과 EU 이외의 국가들까지 확대되었다. 널리 알려져있다시피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1990년 이후 많은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국가 등 제3세계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들도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하고 있다.

일본도 1990년대 초에는 국내카르텔과 수출카르텔이 일본에서 과도한 경쟁을 제거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여겨졌음에도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에 대한 면책을 포기하기 시작하였다.⁵⁷⁾ 한국도 1980년

56) 역내 시장에 영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집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액정(LCD)패널 카르텔 사건에서 위반행위자가 1)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의 부품의 직접 판매, 2) 완성품의 직접 판매, 3) EED 밖의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고객이 EEA 역외에서 가공하여 역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집행대상으로 하였지만, 3)의 경우에는 1)과 2)에 대한 규제로도 충분한 억제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위반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집행위원회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57) 모든 OECD 국가들, EU 회원국, 선정된 개발도상국 등 55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는 법의 집행이 최소한에 그쳤으나⁵⁸⁾ 1999년에는 그러한 추세가 변경되어 개개의 법령에서 허용되었던 카르텔을 폐지하거나 개선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가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통과시켰다.⁵⁹⁾

2002년 5월 한국은 국제카르텔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최초로 벌금을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은 2004년 역외적용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전이었음에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흑연전극봉(graphite electrodes) 카르텔 구성원들에게 8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들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⁶⁰⁾

개별국가의 경쟁당국이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 외에도 국가간의 국경을 초월한 협력적 집행도 증가하고 있다.⁶¹⁾ 경쟁당국간 집행을 위한 협력은 국제카르텔 외에도 다른 독점

출카르텔면책에 관한 2005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일본, 키프러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 등 9개국이 경쟁법을 개정하여 수출카르텔에 대한 명시적인 면책을 폐지하였다. Margaret C.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The Changing International Status of Export Cartel Exemptions", *Am.U. Int'l L.Rev.*, Vol. 20 (2005), p.806.

58) Korea Fair Trade Commissi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Korea*, pp.8-10, <http://ftc.go.kr/data/hwp/0210.doc>. (최종방문 2016.8.31.)

59) Int'l Bar Ass'n, *The Global Competition Forum*, <http://www.globalcompetitionforum.org/asia.htm#korea>. (최종방문 2016.8.31.)

60) 가령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허선, "국제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경험과 논리-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9권), 한국경쟁법학회, 2003; 윤세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역외적용심결에 대한 고찰", 『경영법률』(13권 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3; 윤미경, 『WTO 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2003; 장준혁, "흑연전극봉 카르텔 사건에서의 저촉법적 논점의 검토", 『국제사법연구』(8권), 한국국제사법학회, 2003.

61) OECD, *Hard Core Cartels: Thir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8 Recommendation 30* (2005), <http://www.oecd.org/dataoecd/58/1/35863307.pdf>. (최종방문 2016.8.30.) 이 보고서는 당시에 이미 국제카르텔의 적발, 조사 및 기소에 관한

금지법(antitrust) 집행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 규모의 기업합병에 대한 심사가 가장 두드러진 경우에 속한다. 대강을 추리자면 1990년대부터 약 20여년동안 국제카르텔에 대한 집행 활동에서 몇 가지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세계 곳곳의 많은 국가들이 경성 카르텔 금지정책을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이 있고, 둘째, 국제카르텔에 대한 집행 사례가 매우 증가한 경향이 있다는 것, 셋째, 후술하다시피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일지라도 경쟁당국에 사전 신고할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적 정책 즉 소위 leniency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 넷째, 역외적용, 그리고 다섯째, 가격담합과 같은 카르텔 행위들에 대하여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의 늘어나고 있다는 것 등이다.

국제적 협력이 전례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국가들간의 새로운 조사 형태도 성공을 거두었는 바, 여러 국가들의 동시의 기습적인 조사 등이 그 예이다.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가 자국에서 확인된 증거나 자국에 소재하는 증인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첫 번째로 카르텔의 존재를 고백한 기업들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면책한 경우는 국가간의 정보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카르텔 집행에 관한 노하우와 전문지식 특히 조사기법 분야에서의 협력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가간의 양자간 협력 협정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는 13개국과 유럽연합에 의한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의 결성이다. 그후 2007년에는 80개국 이상이 이 조직에 참여하였다. 이제 국제카르텔에 대한 적발과 처벌은 국제적인 협력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ICN, About the ICN, <http://www.internationalcompetitionnetwork.org/index.php/en/about-icn/>. (최종방문 2016.8.30.)

제 4 장 국제카르텔 국내외 처벌 및 사례 조사와 국제 협력

제 1 절 국내법상의 처벌제도

1990년 초에는 거의 미국만이 국제카르텔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 말 이후 국제카르텔의 시장에 대하여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국제카르텔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카르텔 행위가 해당국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늘어났다.⁶²⁾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느 카르텔이 국내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든 아니면 외국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든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다.⁶³⁾ 다만, 국제카르텔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의 회사로 구성된 것으로서 오랫동안 불법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대부분 잘 드러나지 않는다.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연한 것이 일국의 경쟁당국의 활동범위는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영역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어떤 국제카르텔의 활동을 한 경쟁당국의 활동만으로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카르텔 그 자체가 불법인 반면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자국 경제에 대해 반경쟁적 유해성(anti-competitive harm)이 초래되는 경우에만 국제카르텔을 불법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 Joie, Chowdhury, op.cit.

63) “우리 기업에 총 6,248억원의 카르텔 벌금 부과한 외국경쟁당국에 대한 대책은?” ftc.news.go.kr. 공정거래위원회 2006.03.20. (http://blog.daum.net/ftc_news/6636532); 이에 따르면 2004년 미국은 카르텔 관련 법을 개정하여 기업에 대한 벌금이 1천만 달러에서 1억달러로 상향되었으며 개인에 대한 제재도 벌금 35만달러 이하에서 100만달러 이하, 징역형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였다. (http://blog.daum.net/ftc_news/6636532).

개별국가들의 국제카르텔에 대한 취급은 자국의 국내 경쟁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과징금 등 행정적 규제가 있는가 하면 벌금이나 금고형 등의 형사 제재도 경쟁제한행위의 규제방식이 되기도 한다. 다만, 국가마다 규제의 범위, 내용, 수준, 방법, 효과 및 집행 등의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적인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 카르텔에 대한 제재는 자연인에 대해서는 금고형, 벌금형이 부과되고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 벌금에 행위의 해악성에 따라 배가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바, 미국 등에서 국제카르텔에 대한 벌칙의 부과는 ① 기업 또는 자연인에 대한 벌금, ② 자연인에 대한 징역형(인신구속형), ③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 지급 등으로 이루어진다.⁶⁴⁾

2006년 6월 공표된 EU의 과징금부과 지침(Guidelines on the Effect on Trade Concept Contained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OJ 2004C 10107)에 따르면 행정제재금은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관련 상품의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 × 최대 30% × 계속 연수) + (불법 행위가 행하여진 관련 상품의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 × (15-25)%)을 기본 금액으로 하여 가감사유를 감안하여 계산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상한 금액을 가장 최근 연도의 전세계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제재금이 조정된다.⁶⁵⁾

처벌의 강도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국내경쟁당국이 카르텔을 최우선적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적지 아니한 국가들의 카르텔 활동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불충분하다. 이러한 면에서 카르텔 집행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현행 각국의 제재제도들이 카르텔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엄격한지 의문일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편 과도

64) http://blog.daum.net/ftc_news/6636532

65) 經濟産業省, op.cit., p.5.

하게 엄격한 제재, 예컨대, 카르텔 관련 기업을 파산시킬 정도로 벌금을 부과한다면 해당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냄으로써 오히려 그 시장내에서 적절한 시장참가자 즉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결국은 해당시장의 독점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지의 여부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겠다. 하지만 아무튼 널리 알려지기로 최근 카르텔 규제 동향은 각국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 2 절 리니언시 프로그램(leniency program)의 도입

개별적인 국가별 국내 경쟁당국들은 아무래도 조사를 통하여 카르텔을 적발하고 입증하지 않을 수 없다.

1992년 Archer Daniels Midland(ADM)의 임원인 마크 휘데커(Mark Whitacre)는 법무부에 라이신 그리고 구연산(citric acid)과 액상과당(high fructose corn syrup)을 포함하는 다양한 화학품에서 국제적 가격담합협정을 고백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법의 개혁이 촉발되었다. 1993년 미국 법무부 반경쟁국(Antitrust Division)는 법인사면프로그램(corporate amnesty program)을 개정하여 확대 적용하였고 그 결과 그 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산업에서 담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합을 자백한 최초의 회사에게 미국의 모든 형사처벌로부터 면제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있다.⁶⁶⁾

우리나라의 경우 이 자진신고자 면책조항은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오늘날 경쟁법이 어느 정도 성숙한 국가에서는 예외없이 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요건도 거의 같다.⁶⁷⁾ 미국은 1978년에 Leniency

66) Dep't of Justice Antitrust Div., Leniency Policy Documents,

<http://www.usdoj.gov/atr/public/criminal.htm>. (최종방문 2016.8.31.) (미국 법무부의 현행 법인과 개인에 대한 사면(amnesty)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67) 오행록, “Leniency 제도 집행성과와 향후 과제”, 『경쟁법연구』(16권), 한국경쟁법

Program을 처음 도입하고 1993년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완전 면책을 부여하도록 제도개편을 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효율적인 감면제도 설계방법에 관한 논의가 OECD, ICN 등 국제적 협의체 차원에서 지속되어 왔으며, EU도 1996년 도입고 2002년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일본은 2005년 4월 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 도입하였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도입이래 제도개선에 주력하여 왔다.⁶⁸⁾

전술처럼 한국 경쟁당국의 리니언시 프로그램 도입은 매우 일찌감치 이루어졌다. 한국 경쟁당국이 경쟁법 운용상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것은 이러한 사건화의 경험이 빨랐던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 할 것이다. 이 리니언시 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함으로써 다수의 사건을 한국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빨리 사건화 할 수 있었고,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는 또한 한국 경쟁당국에 대한 평가를 높였다.

어느 한 가지 제품에 대한 가격담합의 적발이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에 관한 그 밖의 협정의 적발로 이어지는 유형의 사례들도 있었으니, 예컨대, 흑연·탄소 카르텔 (graphite and carbon cartels), 고무 화학제품 카르텔(rubber chemicals cartels) 등이 연속적으로 수차례 기소된 바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례는 당해 국가의 어떤 법제도에 힘입은 바 큰 것이어서, 예컨대, 어느 제품에 대한 공모(collude)하여 적발된 기업들이 당해 국가의 법령상으로 허용되는 관대한 처벌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이 참여한 다른 카르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⁶⁹⁾

학회, 2007, 97쪽.

68) 오행록, 윗 글, 97·100·102쪽.

69) 미국 법무부는 법무부가 적발해내지 못한 카르텔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회사에 대해 사면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Scott D. Hammond, Cornerstones of an Effective Leniency Program, Address 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이러한 유형의 사례들은 카르텔 참여자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카르텔의 조직 구조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면책제도의 기본적인 형태는 카르텔조사에 완전히 협력하는 첫 번째 기업 또는 개인에게 문제의 행위에 대한 면책을 약속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프로그램은 첫 번째 기업이나 개인 외에 추후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에게까지 확대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협력행위에 대한 혜택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면책제도는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촉진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면책프로그램은 많은 고자세의 대형 카르텔들을 성공적으로 기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⁷⁰⁾

이러한 면책프로그램 외에도 카르텔조사에 이용되는 다른 수단들도 있을 수 있다. 먼저 카르텔 참여혐의가 있는 기업의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하는 현장급습을 통하여 파일을 검토하고 압수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⁷¹⁾

제 3 절 우리나라의 국제카르텔 규제 관련 법규정과 국제 협력

1.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1)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2004년 12월 31일 신설된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에 의하면 동법은 국외에서 이

Workshop on Leniency Programs (Nov. 22-23, 2004),

<http://www.usdoj.gov/atr/public/speeches/206611.htm>. (최종방문 2016.9.1.)

70) Joie, Chowdhury, op.cit.

71) Joie, Chowdhury, op.cit.

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이는 효과주의에 입각한 역외적용원칙은 천명한 것이다. 제55조의3 제1항은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및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국제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은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이며 제22조에 따라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금액의 산정, 의무적 조정, 재량적 조정, 과징금액의 산정의 4단계를 거치게 된다.

(3) 리니언시(면책제도)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1항에 의하여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2016년 3월 29일 개정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동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제19조제1항(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 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제1호).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제2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1)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3)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제3호).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상기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제4호).
- 한편 제5호와 제6호는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자진신고자 등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제1호) 또는 1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는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제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협력

(1) 개 관

국경을 초월하는 카르텔에 대한 경쟁당국 간의 협력메커니즘을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즉, ① 첫째 협력의 기본틀의 성격, ② 교환되는 정보의 유형 ③ 조사단계 등이다.

첫 번째로 협력의 근거가 되는 문서의 성격에 따르면, 협력은 법규정 또는 협정에 의한 공식적인 유형과 공식적인 문서와 협정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유형이 있다.

둘째 협력메커니즘은 교환되는 정보(공개적인 정보이든 아니면 비밀 정보이든 아니면 관련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이든 간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셋째, 개개의 조사 단계는 (사전조사단계, 조사단계, 조사후의 단계) 협력의 방법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⁷²⁾

(2)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국가 경쟁기관과의 협력

1)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공정거래위원회는 많은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경쟁에 관한 장(Competition Chapter)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국과 경쟁 관련 협력유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과는 경쟁에 관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또 다른 국가들 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캐나다, 러시아, 루마니아, 독립국가연합(CIS) 및 터키와는 기관차원의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에 관한 회원국간의 협력에 관한 OECD 권고”에 따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공식적인 문서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협력도 카르텔에 관한 보다 효과적인 조사와 집행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국가 관련 기관의 상대방과의 전화, 이메일 또는 직접 면담 등을 통하여 접촉하여 그들의 진행중인 조사에 관하여 의논한다.⁷³⁾

2) 협력을 위하여 교환하는 정보의 종류

현재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과 비밀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협정은 없지만 2개 이상 국가 경쟁당국

72) Improv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artel Investigations (2012), <http://www.oecd.org/daf/competition/ImprovingInternationalCooperationInCartelInvestigations2012.pdf>. (최종방문 2016.9.1.)

73) op.cit.

에게 면책/신청을 제출한 카르텔 참여기업이 자신과 관련된 자료가 이들 경쟁당국들에 의해서 논의, 교환 및 공유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그 자료는 공유될 수 있다.⁷⁴⁾

3) 조사단계에서의 협력

① 조사전 단계에서의 협력

이 단계에서 관련국 경쟁당국간에 예비정보를 교환하고 현장조사계획이 조정된다. 예컨대, 국제항공화물할증 카르텔과 CRT 및 CDT 유리카르텔에 관한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 후 동시에 새벽기습을 감행하였다.

② 본조사 단계에서의 협력

이 단계에서 동일한 카르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복수 국가의 경쟁당국들은 서로 자신들의 기소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증인인터뷰 일정을 조정한다. 현장조사 직후 다른 관련 국가 경쟁당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게 된다. 이 때 어떤 국가의 경쟁당국에게 그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조사부서의 명칭, 조사대상 회사, 사건명 및 조사 이유, 그 절차, 한국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 등을 통보한다.

(3) 평 가

공식적이고 법적인 협력메커니즘은 카르텔조사에서의 경쟁당국들간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야 하지만 관련 국가들간의 신뢰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는 점은 더욱 중요하다. 초국경적 카르텔 사건에서 기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가 여러 국가들에게 흩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각국의 경쟁당국들은 동시에 적

74) op.cit.

발을 위한 급습을 위한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과의 광범위한 당해 카르텔 관련 정보의 교환을 허용한다는 권리포기를 자백회사로부터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사건의 처리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전화 대화, 이메일 교환, 대면회의 등과 같은 경쟁당국들간의 비공식적인 협력 역시 불가결하다고 여겨진다.

3. 주요 국제카르텔 사례 분석

(1) Marine Hose 카르텔 사건

이 사건은 유조선, 석유비축기지설립등과 송유관에 쓰이는 고무제 호스(marine hose) 관련 8개 기업들이 국제입찰 담합, 수주조정 및 가격 카르텔을 형성하여 각국의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 결정방법을 미리 합의하고 수주 예정자가 스스로 정한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기업들이 협력한다는데 합의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호주, 브라질 등에서 당시에 존속하고 있던 6개 기업에 대해 조사하여 제재금 등이 부과되었다.⁷⁵⁾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브리지스톤에 3억 1900만원, Parker ITR에 4200만원, Trelleborg Industrie에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⁷⁶⁾

<일 본>

2008년 2월 부당한 거래 제한을 이유로 5개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명령(排除措置命令: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렸으며 横浜(요코야마)

75) 이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주요 국가의 대응에 대해서는

<http://www.internationalcompetitionnetwork.org/uploads/library/doc729.pdf>. (최종방문 2016.9.1.)

76) <http://www.internationalcompetitionnetwork.org/uploads/library/doc729.pdf>. (최종방문 2016.9.1.)

고무는 리니언시 신청에 의하여 과징금을 면제받았으며 브리지스톤에 대해서만 일본에 소재하는 수요자가 발주한 것과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238억엔(리시언시에 근거하여 30% 감면된 금액)을 부과하였으며 다른 외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상기간 동안 일본 소재의 수요자가 발주한 바 없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⁷⁷⁾

<EU>

EU 위원회는 2009년 1월 EU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11개 마린호스 제조판매업체에 대하여 위반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브리지 스톤에 5850만유로, Dunlop(영국)에 1800만유로, Trelleborg Industrie(프랑스)에 2450만유로, Parker ITR에 2561만유로, Manuli Rubber Industries(이탈리아)에 490만유로의 제재금 지불 명령을 결정을 내렸다.⁷⁸⁾ 한편, 제재금 산정과 관련하여 유럽 위원회는 이 사건이 국제적인 카르텔사건인 바, EEA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보다 전 세계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이 카르텔 참여기업들의 책임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각각의 EEA지역 매출액에 세계시장점유율을 곱부시켜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각각의 제재금을 산출을 하였고, 그 결과 유럽 역내에서는 거의 매출이 없었던 브리지 스톤에 대해서도 제재금이 부과되었다.⁷⁹⁾

<미 국>

요코하마 고무는 리니언시 신청을 하여 제재금을 면제받았으며, 2011년 브리지 스톤이 미국의 법무부와 2,800만달러 벌금을 지불하는

77) 經濟産業省, op.cit., p.11.

78) http://ec.europa.eu/competition/elojade/isef/case_details.cfm?proc_code=1_39406.; (최종방문 2016.9.1.)

http://ec.europa.eu/competition/publications/cpn/2009_2_12.pdf. (최종방문 2016.9.1.)

79) 經濟産業省, op.cit., p.12.

사범거래(plea bargaining)을 하였으며 그 밖에도 Dunlop, Manuli Rubber Industries, Parker ITR 및 Trelleborg Industrie가 각기 다른 금액의 벌금을 지불하는 사범거래를 하였다. 사범거래합의서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미국이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는 마린 호스에 대해서, 입찰담합 가격카르텔 등에 의한 경쟁제한을 목적으로 담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들이 사범거래를 통하여 지불에 합의한 벌금의 산정근거가 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아니하였다.⁸⁰⁾

<호주 등>

호주에서는, 브리지 스톤, 던롭, Parker ITR, Trelleborg Industrie에 대해서 총 824만 호주 달러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며, 브라질에서는 2008년 브리지 스톤이 159만 4000레알의 제재금을 지불하는 행정상 화해를 하는 것을 또한 2009년 Manuli Rubber Industries가 210만 레알의 과징금을 지불하고 행정상 화해를 하는 것을 인정했다.⁸¹⁾

<평 가>

이 사례에서 보듯이 각국이 다른 제재금 부과 방식을 취한다면 이 중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으며(EU와 같은 산정방식을 취하는 경우 참조) 이와는 반대로 부당하게 제재금의 감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범거래를 위하여 합의하는 벌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액은 그 산정근거를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EU에서는 EEA지역에 소재하는 구매자에 의하여 지불된 매출을 “EEA지역 매출”로서 사용하면서도 더 나아가 당해 기업의 전 세계점유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각 당사자의 과징금의 베이스가 되는 매출

80) op.cit.

81) op.cit.

액을 산정한 하였다. 이는 실제로는 EEA내에서 매출을 거의 가지지 않는 브리지 스톤에도 고액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는 점이 다른 국가에서의 처리와 다른 점이다.⁸²⁾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에 소재하는 수요자가 발주한 것에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본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입장은 우리나라와도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2) 흑연전극 카르텔

흑연전극 생산판매기업들은 가격 담합과 생산량 조정을 하는 카르텔을 형성하였으며 유럽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 기업들이 지역별 home producer를 정하고 이들이 각 지역에서 흑연전극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미국과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UCAR UCAR International(미국), 다른 유럽지역에서는 SGL Carbon(독일)이, 그리고 일본 및 기타 극동 지역 일부에 대해서는 4개 일본 기업들이 home producer가 되도록 하였고, 홈프로듀서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카르텔 참여기업들의 합의에 의하여 가격 결정을 하였다.⁸³⁾

EU에서는 홈프로듀서로 지정된 UCAR 및 SGL이 고객에 대하여 가격 인상을 고지하고 이를 수용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다른 카르텔 기업들도 이에 따르는 방법으로 흑연전극 가격을 조정하였다고 판단하고 위반기업에 대해 총 2억 1880만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지만, 이들 기업들은 유럽 1심법원에 제소하여 일본의 쇼와전공(昭和電工)은 제재금을 감액받았으며 다른 기업들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하여 첫

82)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01-1625_en.htm?locale=en. (최종방문 2016.9.1.)

83) 經濟産業省, op.cit., p.14.

째, 과징금의 산출에 사용된 계수(deterrence multiplier)를 산정하는데 위반행위자의 세계 매출액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며, 둘째 계수를 산정하면서 기준에 과실이 있었으며, 셋째, EU 역외에서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이중 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럼에도 유럽사법재판소는 계수는 적정한 억제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위반기업의 규모도 고려되므로 세계 매출액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며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어떤 법역이 자신들의 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 부과하는 제재금은 다른 법역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⁸⁴⁾

EU에서 제재금 산정에서 EEA에서의 매출을 기준으로 제재금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첩 적용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반행위자들이 과징금의 산출에 사용된 계수(deterrence multiplier)를 산정하는데 위반행위자의 세계 매출액을 고려하였다는 주장도 사업 규모를 고려하기 위한 지표로서 세계매출액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중첩적용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EU 역외에서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EU가 EU 경쟁법 위반으로 제재금을 부과하였다는 주장 역시 당해 기업들의 EEA에서의 매출을 기준으로 제재금 산정 기초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중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전력케이블(Power cable) 사건

땅속 및 해저에 부설하는 고압전력케이블 제조사업자가 가격담합 및 시장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카르텔을 형성하였는데, 유럽에서는 2014년 4월 ABB(스위스), Nexans(프랑스), Prysmian(이탈리아), “제이 파워 시스

84) 경제산업성., p.16.

템즈”(일본), 서비스 캐스(일본), 엑심(일본), Brugg(스위스), NKT(덴마크), Silec(프랑스), LS전선(한국) 및 대한(한국) 등 11곳에 제재금이 부과되었으나, ABB는 위반 행위자였지만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제재금을 전액 면제받았다.⁸⁵⁾ 유럽위원회는 위반기업들이 회의, 이메일 및 전화 등으로 수주자를 결정하고 거의 세계적인 규모로 시장과 고객을 분할하였는 바, EEA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였으니, 즉 첫째, 위반행위자들은 유럽고객에 대한 발주에 대하여는 유럽 외의 기업들이 이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둘째, 입찰과정에서 위반행위자들은 회의, 이메일, 기타 연락수단을 통하여 가격 수준에 대하여 합의하여 유럽의 관련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수주조정을 하였다는 것이고, 유럽위원회는 그러한 행위가 EU 경쟁법이 금지하는 카르텔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반행위자들에 대해 각기 다른 금액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⁸⁶⁾ 유럽 위원회의 결정에서는 EEA 역내에서의 매출액을 제재금 산정의 기준으로 설정하면서도 이 기준만으로는 일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적절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해 위반 행위로 얻어진 매출과 관련된 세계시장 점유율(다만 미국에서의 매출을 제외)의 비율에 따라서, EEA 역내에서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련된 전체 매출액을 각 위반 행위자에 할당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제재금을 산정하였다.⁸⁷⁾

이 사건에서 일본 공정위는 2010년 1월 국내 전력 회사가 발주하는 전력용 전선 등을 대상으로 견적을 조율함으로써, 수주 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엑심, 제이 파워 시스템즈 및 비스카스에 대해서 위반행위 중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으나 이 땅 및 해저에 부설하는 고압 전력 케이블 부설 공사에 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았다.⁸⁸⁾

85)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Data base,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58_en.htm. (최종방문 2016.9.2.)

86) Ibid.

87) 經濟産業省, op.cit., p.19.

88) Ibid., p.20.

(4) Dram 카르텔

유럽위원회는 2010년 히다치 (日立), 도시바(東芝), 三菱(미츠비시), 日本電氣(NEC), 엘피다(일본), 삼성전자(한국), 하이닉스(한국), 인피니온(독일), 난야(대만) 등 9개 기업들이 EEA 역내에서 판매하는 드램(Dram)과 관련하여 회의와, 전화 등을 통하여 그 가격정보와 기타 비밀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조정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들 기업들에 각기 다른 금액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⁸⁹⁾ 미국의 마이크론(Micron Technology)도 위반행위자였지만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문제의 카르텔을 최초로 유럽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제재금을 전액 면제받았는데, 이 사건은 2008년 EU에서 제정된 화해절차가 최초로 적용된 사건이며,⁹⁰⁾ 이에 따라 9개 기업에 부과된 제재금이 일률적으로 10%를 감면받았다.⁹¹⁾

이 사건에서 유럽위원회는 위반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EEA 역내 매출을 기초로 제재금을 산정하였는바, 다른 국가들이 동일한 카르텔에 대해 제재를 한다면 간접판매와 관련하여서는 EU의 제재와 중복될 수 있었을 것이다.⁹²⁾

89) 經濟産業省, op.cit., p.29.; Antitrust: Commission fines DRAM producers € 331 million for price cartel; reaches first settlement in a cartel case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0-586_en.htm; DRAM price fixing,
https://en.wikipedia.org/wiki/DRAM_price_fixing. (최종방문 2016.9.1.)

90) 經濟産業省, op.cit., p.29.

91) Antitrust: Commission fines DRAM producers € 331 million for price cartel; reaches first settlement in a cartel case,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0-586_en.htm. (최종방문 2016.9.1.)

92) op.cit.,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0-586_en.htm. (최종방문 2016.9.1.)

<EU에서의 제재금액>⁹³⁾

위반기업	제재금액 (유로貨)	감면율
히다치	20,412,000	10%
NEC	10,296,000	28%
히다치 및 NEC	연대하여 2,124,000	10%
도시바	17,641,800	20%
미즈비시	16,605,000	20%
엘피다	496,000	28%
하이닉스	51,471,000	42%
인피니온	56,700,000	55%
삼성	145,728,000	28%
난야	1,800,000	10%
마이크론	0	100%

미국에서는 2006년 3월 엘피다와 미국 사법부간의 84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하는 사법거래를 하였다.⁹⁴⁾ 원래 엘피다에 대한 기소장에서는 미국 기타의 가격조정 행위 등을 위반행위로 지적하고 있었는 바, 이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더라면 다른 법역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었지만, 엘피다와의 사법거래 합의서에서는 미국 내의 OEM 사업자에 대한 매출 중 위반으로 직접 영향을 받은 범위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역과의 제재 중복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⁹⁵⁾

93) 經濟産業省, op.cit., p.30.;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0-586_en.htm. (최종방문 2016.9.1.)

94) Elpida is latest in DRAM cartel to plead guilty to price fixing, <http://arstechnica.com/uncategorized/2006/01/6092-2/>. (최종방문 2016.9.1.)

95) 經濟産業省, op.cit., p.30.

제 5 장 결론: 국제카르텔과 경쟁당국 협력 증진

1. 경쟁당국 협력의 필요

자국법을 국경 밖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 수단을 갖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일방적 관할주의를 통해 국제경쟁규칙을 제정하고 자국의 법집행 기관을 통해 이를 집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⁹⁶⁾ 미국이 경쟁법 등을 역외적용하는 선두에 섰던 것도 우연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여타국가들도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같이 역외적용을 선언하고 법적용을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일부국가들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할 능력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경쟁당국간 협력을 통하여 자국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국제카르텔을 규율하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격담합(price fixing)을 금지하는 강력한 공정거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제카르텔은 지속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국제카르텔은 거의 30년 동안 광범위하게 중간재 등(intermediate goods and services)의 분야에서 적발되어 왔다. 장기에 걸쳐 유지되어온 국제카르텔은 정교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메커니즘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당해 국제카르텔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이른바 prisoners' dilemma에서⁹⁷⁾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카르텔은 소모적인 가격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 참여회사의 기만행위(cheating)를 억제하기 위한 정교한 보상제도를 사용하고

96) David J. Gerber 저/이동률 역, 「국제경쟁법」, 박영사, 2014.11., 7쪽.

97)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도 그 증거가 불충분하고 서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의 두 죄수가 있을 때, 둘 중 한 명이 자백을 하게 되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둘 다 자백을 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둘 다 자백을 하지 않을 때도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인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사회학사전, 2000.10.30., 사회문화연구소)

있다. 이들 카르텔은 평균 7년 6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으며⁹⁸⁾, 이 경우 새로운 회사들의 시장진입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면 가격 인상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공정경쟁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잠재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한편, 카르텔에 대한 집행 촉진에 관하여는 다양한 권고들이 있으며 그러한 권고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다.⁹⁹⁾

- 카르텔이 초래하는 해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다면 효과적인 반 카르텔제도를 안출하는 것은 보다 용이할 것이다. 그러한 현재까지는 그에 관한 충분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제카르텔의 유해한 효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¹⁰⁰⁾
- 카르텔 운영자들은 점차 정교해지고 그에 따라 증거를 은닉하는데 숙달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카르텔의 적발과 입증을 위한 정보수집 기법이 요구된다.¹⁰¹⁾
- 카르텔을 억지하기 위한 제재수단도 개발되어야 한다. 한 가지 제안은 카르텔 참여회사에 대한 벌금은 카르텔을 통하여 얻은 이득의 3배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관련된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²⁾

국제적인 집행협력을 충분할 정도로 강화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의 요건은 향후에도 국제협력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회사들은 집행기관에 제공되는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면책정책을 갖지 아니한 국가들에서까지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으로 여긴다면 Leniency 프로그램(자진신고자

98) 각주 43 인용문헌 참조.

99) Joie, Chowdhury, op.cit.

100) Joie, Chowdhury, op.cit.

101) Joie, Chowdhury, op.cit.

102) Joie, Chowdhury, op.cit.

감면제)에 의하여 부여되는 면책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들의 면책 정책의 보다 확실한 수렴이 필요하다.¹⁰³⁾

2. 카르텔규제를 위한 국제협력 촉진 노력

국제카르텔은 그 범위가 국가를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반카르텔집행은 개별국가들의 국내법과 결부시켜 채택되는 적극적인 국제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카르텔을 다루는 다자간기구가 있어야 하는가 또는 카르텔에 대한 적발과 입증하는 일은 국가차원에 일임하고 협력의 기본틀만 규정하는 다자간 협정이 있으면 충분한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WTO에서 제안한 바 있는 그러한 기본틀은 후자의 입장에 입각한 것이다.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들은 국제카르텔과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특히 OECD,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등을 예시할 수 있다. 국제기관들이 국제카르텔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제카르텔이 어느 정도로 유해한지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국제카르텔에 관한 회원국들간의 의미 있는 국제협력이 실현되기에는 어려움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각 국가는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이다. 각 국은 자기 영역내에서 독립된 법령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대개 자국 당국의 정보를 보호하거나 어느 정도 비밀을 갖추기 위한 법령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국제카르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경쟁당국들은 아마도 다양한 비밀을 취득할 것이 예상된다. 리니언시 제도는 각국에서 널리 채택이 확산되는 제도인데, 그 결과 보다 쉽게 취

103) Joie, Chowdhury, op.cit.

득할 수 있게 되는데, 같은 국제카르텔을 조사하는 각국 경쟁당국들이 이를 쉽게 공유하지는 않을 것 같다. 때로는 별로 비밀스럽지 아니한 당연히 공개될 수 있는 정보조차도 공유되지 않음으로서 경쟁당국 수사를 위한 정보에 장벽이 생기기 쉽다.

3. 다자간 협정

국제카르텔을 다루는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간 체제가 필요한 것인가? 아마도 여러 번 경쟁당국들 간에 카르텔 조항도 포함시켜 보려는 대화가 있었던 적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별로 널리 알려진 그러한 협정의 결과는 없는 것 같다. 물론 어떠한 논의이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있고, 대개 양 논거들 모두 나름대로의 어떤 설득력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별로 알려지고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국가들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더하여 필수적인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결여되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다. 개발도상국일수록 선진국의 실질적인 협력 없이는 국제카르텔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이 실무상 논리상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협력의 수준은 비밀유지의 요구를 감안해볼 때 당장 출현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제안된 협정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믿을만한 메커니즘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예컨대, 많은 개도국들은 경쟁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그러한 협정에 대한 선진국의 주요한 동기는 소비자 보호보다는 시장접근이라고 여겨진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협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 널리 참여시킴으로써 당위성을 모두들에게 확산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4. 양자간 협정

국제협력은 양자간 협정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다. 양자간 협정에 다루어야 한 문제들로는 국내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의 조사협력, 관할문제, 비밀정보의 공유 및 교환이다. 미국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결에 적극적이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러한 협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효과적인 양 당사국간 경쟁당국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공정거래법 제62조 비밀엄수의 의무라는 표제어하에서,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양 당사국간 경쟁당국의 협력은 철저하게 상호호혜적이거나 또는 반경쟁법적 제재를 위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수단의 힘의 불균형에 따라 상호 보유하거나 조사중인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대가 관계에 따라 협력이 가능할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완화는, 경쟁당국의 공무원 또는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자에 대하여 사후 검증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상당한 문서 비밀적용기간이 지난후에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벌칙들에 대한 공소시효 등이 상당히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적·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단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 경쟁당국과의 양자간 협정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협정 내용에 따라 우리가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우리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정보가 더 우월적 지위를 지닌 경쟁당국에게 사용될 경우 우리의 국익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가 치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 내 문 헌

- 김민서, “국제경제관계에서의 국가관할권에 관한 연구: 미국의 효과 이론과 속인주의 확대시도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대한국제법학회, 2003.12.
- 김용진, “국제특허분쟁사건에 대한 역외적 국내재판 경향과 그 대응 전략”,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6.8.
- 김용진, “미국 증권법의 역외적 적용에 관한 최근 동향과 미국 증권 집단소송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 방안”, 『동아법학』, 동아대 법학연구소, 2011.8.
- 박번순/전영재,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2001.6.
- 오행록, “Leniency 제도 집행성과와 향후 과제”, 『경쟁법연구』(16권), 한국경쟁법학회, 2007.
- 윤미경, 『WTO 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2003.
- 윤세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역외적용심결에 대한 고찰”, 『경영법률』(13권 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3.
- _____, “세계화시대의 공정거래법의 전개 방향”, 『저스티스』(통권 98호), 2007.6.
- 이재민, “IUU규제조치와 국내법의 역외적용: 미국 및 EU의 관련 입법과 집행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11.

참 고 문 헌

이호영, “동아시아 3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총』, 전북대 법학연구소, 2010.6.

장준혁, “흑연전극봉 카르텔 사건에서의 저촉법적 논점의 검토”, 『국제사법연구』(8권), 한국국제사법학회, 2003.

허선, “국제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경험과 논리 -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9권), 한국경쟁법학회, 2003.

David J. Gerber 저/이동률 역, 『국제경쟁법』, 박영사, 2014.11.

2. 외 국 문 헌

經濟産業省, 国際カルテル事件における各国競争当局の 執行に関する事例調査報告書 (2006).

9th Circuit Upholds Criminal Judgment and \$500 Million AUO Antitrust Fine for LCD Price-Fixing Conspiracy.

Allison J. Himelfarb, Comment, “The International Language of Convergence: Revising Antitrust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with a Uniform Understanding of “Extraterritoriality,” U. Pa. J. Int’l Econ. L., Vol.17 (1996)

Antitrust: Commission fines DRAM producers € 331 million for price cartel; reaches first settlement in a cartel case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0-586_en.htm; DRAM price fixing

- Barbara Alexander, “The Impact of Exchange Rate Levels and Changes on International Cartels: Implications for Liability and Overcharges”, *Antitrust L.J.*, Vol. 70 (2003).
- Commission Decision of 21 November 2001 relating to a proceeding pursuant to Article 85 of the EC Treaty and Article 53 of the EEA Agreement (Case COMP/E-1/37.512 – Vitamins).
- Commission Decision of 13 July 1994 relating to a proceeding under Article 85 of the EC Treaty, (Case IV/C/33.833 – Cartonboard).
- Commission Decision of 3 December 2003 relating to a proceeding pursuant to Article 85 of the EC Treaty and Article 53 of the EEA Agreement (Case C.38.359 – Electrical, Mechanical Carbon, & Graphite Products).
- Dep’t of Justice Antitrust Div., Leniency Policy Documents.
- Elpida is latest in DRAM cartel to plead guilty to price fixing.
- Helga Nussbaum, “International Cartel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Multilateral Enterprises in IN Historical Perspective*, (Alice Teichova, Maurice Lévy-Leboyer & Helga Nussbaum eds., 1986).
- Improv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artel Investigations (2012).
- Int’l Bar Ass’n, The Global Competition Forum.
- James J. Friedberg, “The Convergence of Law in an Era of Political Integration: The Wood Pulp Case and the Alcoa Effects Doctrine”, *U. Pitt. L. Rev.*, Vol 52 (1991).
- John M. Connor & Robert H. Lande, “How High Do Cartels Raise Prices? Implications for Optimal Cartel Fines”, *Tul. L. Rev.*, Vol. 80 (2005)

참 고 문 헌

John M. Connor, Private International Cartels: Effectiveness, Welfare, and Anticartel Enforcement, Purdue Agricultural Economics Working Paper No.03-12

Joie Chowdhury, International Cartels - An Overview, Brief Paper No.5/2006 Cuts Center for Competition, Investment & Economic Regulation.

Joel Klein, The War Against International Cartels: Lessons from the Battlefield, Address at Fordham Corporate Law Institute, 26th Annu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Antitrust Law & Policy 5 (Oct. 14, 1999),

Joel M. Podolny & Fiona M. Scott Morton, “Social Status, Entry and Predation: The Case of British Shipping Cartels 1879-1929”, J. Indus. Econ., Vol.47 (1999)

Korea Fair Trade Commissi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Korea.

Marc Hansen, Recent Developments in European Cartel Enforcement.

Margaret C.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International Cartels”, 2 Issues in Competition Law and Policy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2008)

Margaret C.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The Changing International Status of Export Cartel Exemptions”, Am.U. Int'l L.Rev., Vol. 20 (2005)

Margaret C. Levenstein & Valerie Y. Suslow, “What Determines Cartel Success?” J. Econ. Lit., Vol. 44 (2006)

Motorola Urges Justices To Clarify Law In LCD Cartel Fight.

OECD, Fighting Hard Core Cartels: Harm, Effective Sanctions and Leniency Programs.

OECD, Hard Core Cartels: Thir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8 Recommendation 30 (2005).

Pradeep S Mehta, Nitya Nanda and Alice Pham, Multilateral Competition Framework: In Need of a Fresh Approach, CUTS International (2005).

Scott D. Hammond, Cornerstones of an Effective Leniency Program, Address 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Workshop on Leniency Programs (Nov. 22-23, 2004).

Steven L. Snell, “Controlling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in Global Markets: Reflections on the Concepts of Sovereignty, Fairness, and Comity”, Stan. J. Int’l L. Vol.33 (1997).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Empagran.

Valerie Y. Suslow, “Cartel Contract Duration: Empirical Evidence from Inter-war International Cartels”, Indus. & Corp. Change, Vol. 14 (2005).

Org. for Econ. Cooperation & Dev.,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Effective Action Against Hard Core Cartels, OECD Doc. C(98)35/FINAL 3, 1998.

UPDATE 1-U.S. top court rejects AU Optronics over \$500 million price-fixing fine.

U.S. Dep’t of Justice, Sixth Samsung Executive Agrees to Plead Guilty to Participating in DRAM Price-Fixing Cartel (Apr. 19, 2007).

참 고 문 헌

William Kovacic, et. al, Lessons for Competition Policy from the Vitamins Cartel.

3. 웹 사 이 트

[네이버 지식백과] 수인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사회학사전, 2000.10.30., 사회문화연구소)

NEW 경제용어사전, 미래와경영연구소, 2006.4.7., 미래와 경영

http://www.academia.edu/8642101/Private_International_Cartels_-_An_Overview

<http://ageconsearch.umn.edu/bitstream/28645/1/sp03-12.pdf>.

<https://www.oecd.org/competition/cartels/1841891.pdf>□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2560&cid=42111&categoryId=42111>

https://en.wikipedia.org/wiki/Base_point_pricing.

<http://www.usdoj.gov/atr/public/speeches/3747.pdf>

https://www.justice.gov/archive/atr/public/press_releases/2007/222770.htm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v._Alcoa.

<http://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F2/749/1378/359283>

https://en.wikipedia.org/wiki/Hartford_Fire_Insurance_Co._v._California

http://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publishing/antitrust_source/aug13_lipsky_7_30f.authcheckdam.pdf

<http://www.meti.go.jp/press/2016/06/20160603002/20160603002-1.pdf>

<http://ftc.go.kr/data/hwp/0210.doc>.

<http://www.globalcompetitionforum.org/asia.htm#korea>.

- <http://www.oecd.org/dataoecd/58/1/35863307.pdf>.
- <http://www.internationalcompetitionnetwork.org/index.php/en/about-icn/>
- <http://www.usdoj.gov/atr/public/criminal.htm>
- <http://www.usdoj.gov/atr/public/speeches/206611.htm>.
- <http://www.oecd.org/daf/competition/ImprovingInternationalCooperationInCartelInvestigations2012.pdf>
- <http://www.internationalcompetitionnetwork.org/uploads/library/doc729.pdf>
- [http://ec.europa.eu/competition/elojade/isef/case_details.cfm?proc_code=1_39406.;](http://ec.europa.eu/competition/elojade/isef/case_details.cfm?proc_code=1_39406;)
- http://ec.europa.eu/competition/publications/cpn/2009_2_12.pdf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01-1625_en.htm?locale=en
- <https://faculty.fuqua.duke.edu/~marx/bio/papers/PostPleaPricing.pdf>.
- <https://www.lw.com/presentations/cartel-enforcement-and-litigation-in-us-and-eu>.
- [http://files.arnoldporter.com/advisory-supreme_court_decision_empagran\(6-2004\).pdf](http://files.arnoldporter.com/advisory-supreme_court_decision_empagran(6-2004).pdf).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58_en.htm.
- https://en.wikipedia.org/wiki/DRAM_price_fixing.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0-586_en.htm.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0-586_en.htm
- <http://arstechnica.com/uncategorized/2006/01/6092-2/>.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3e9082b-cd3d-41b1-b090-d8a2924e4ea3>.

참 고 문 헌

<http://www.law360.com/articles/660501/motorola-urges-justices-to-clarify-law-in-lcd-cartel-fight>.

<http://blogs.orrick.com/antitrust/2014/08/08/9th-circuit-upholds-criminal-judgment-and-500-million-ao-antitrust-fine-for-lcd-price-fixing-conspiracy/>

<http://www.reuters.com/article/usa-court-pricefixing-idUSL1N0Z10QC20150615>

http://www.cuts-ccier.org/pdf/Multilateral_Competition_Framework_In_Need_of_a_Fresh_Approach.pdf.